건설동향브리핑[1] – 건설 정책 및 경영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KICEM

1. 건설 정책 동향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본 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책 방향

건설동향브리핑 제671호(2018.08.13.) 최수영 부연구위원

■ **원인자 부담원칙의 의미**

원인자 부담원칙은 특정 원인을 제공한 자가 기본적으로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반영한다.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원칙에서 유래했으며, OECD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경제학 기본 원칙의 하나이다. 국내 제도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 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에 반영되어 있다.

■ **'선판매 후생산' 구조의 건설업, 주 52시간 근무제 대응 힘들어**

대표적 수주 산업인 건설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노무비 상승분을 계약 변경을 통해 판매가에 적용하기 힘든 구조이다. 대부분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생산비 상승분(노무비 포함)을 판매가에 적용할 수 있는 '선생산 · 후판매' 구조이나, 계약 단계에서 판매가가 결정되는 건설업은 생산비 상승분을 판매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건설업은 사업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쉽지 않은 실정이다. 37개 공사현장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무비는 평균 9.1%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총공사비는 평균 4.3%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생산비 상승 원인은 정부가 제공, 부담은 발주자 혹은 시공자가 떠안아**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설사업에 있어 생산비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부담은 발주자나 시공자가 떠안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기 계약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 즉 정부가 생산비 상승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담을 발주자가 책임지는 것이 논리적이다. 때문에 공공공사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총공사비 증가분에 대한 계약 변경을 허용할 명분이 충분하며, 제도적 장치 또한 일부 마련되었다. 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이나 민간 발주자나 건설사가 생산비 상승의 부담을 지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 생산비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 모두가 경영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다.

■ **기 계약된 민간공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 필요**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봤을 때, 진행 중인 민간공사는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공사는 발주자가 생산비 상

1)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주간으로 발간하는 「건설동향브리핑」은 건설 정책 · 경제 · 경영 이슈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회지 [CEM Info] 섹션에서는 「건설동향브리핑」 최신호 일부를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소개된 전문은 www.cerik.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기 계약된 공공공사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계약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후 민간사업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각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 생산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의 주요 이슈

건설동향브리핑 제675호(2018.09.10.) 나경연 부연구위원

■ 업역 : 종합 · 전문 건설업이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역 구분 폐지

9월 5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에 따르면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급 및 시공이 허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종합과 전문업체 모두 상대 업역의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직접 시공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시점에 기술자(전문업체 → 종합공사), 장비(종합업체 → 전문공사)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종합공사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보유한 경우, 해당 종합공사의 원도급이 허용된다. 전문공사는 종합업체의 등록된 업종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전문공사의 원도급 및 하도급 수급 허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업역 개편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 기간으로 최소 1년(2019년)을 부여했다. 이후 공공 토목(2020년), 모든 공공(2021년), 모든 공사(2022년) 순으로 단계적 허용 방안이 제시되었다.

■ 상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조건 및 실적 인정기준 마련 등 보완장치 제안

업역 규제 완화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① 입찰 시점에 기술자, 장비 등 상호 시장 진출시 갖춰야 할 조건 설정, ② 전문간 컨소시엄과 주력 업종을 보유한 전문업체의 원도급 허용 여부 및 기준 마련, ③ 동일 업종의 하도급 제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소규모 하도급공사에 종합업체의 진입 제한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사 실적관리 체계 개편 및 공공공사 발주 가이드라인의 마련 방향도 제시되었다.

■ 업종 : 내년에 갈등 완화 차원의 소규모 정비, 익년부터 전문업종 통합화 등 대규모 개편

업역 개편 유예 기간에 타 업종과의 갈등 소지가 큰 업종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① 토목건축은 토목과 건축으로 각각 분할 등록하고, ② 강구조물–철강재설치공사는 통합하며, ③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개 이상 공종의 개량 · 보수 · 보강 공사가 가능한 만능 면허로 인식됨에 따라 직접 시공을 강조하는 동시에 업무 범위 조정 및 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19년 상반기에 건설산업 업종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 등록기준 : 자본금 완화, 기술자 경력 요건의 강화, 전문업종 영위 후 종합업종으로 등록

자본금 기준은 2019년 70%, 2020년 50% 수준으로 완화하되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및 보증가능 금액의 상향 조정을 병행한다(자본금 대비 2019년 30~60%, 2020년 50~80% 수준). 또한 기술능력 기준으로 기술자의 경력 요건 및 기능인력 요건을 추가로 검토하고, 전문업종을 등록한 후 1~2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종합업종 등록을 허용한다.

■ 건설 생산체계 혁신의 실효성 확보 및 혁신의 범위 확대 필요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의 내용이 현재 체계의 업종 · 업역 위주로만 논의되어 제로섬 논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산체계 관련 로드맵의 마련에 있어 정부는 제도 개선이 아닌 제도 혁신으로 법령을 다시 만든다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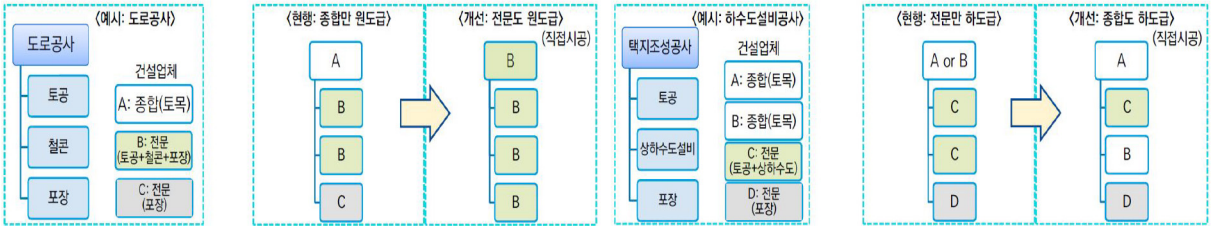

그림 1. 종합공사(도로공사, 左) 및 전문공사(하수도 설비공사, 右) 예시

공공공사 예정가격 부당삭감 문제와 개선방안

건설동향브리핑 제675호(2018.09.10.) 전영준 부연구위원

■ **적정한 예정가격 설정의 중요성**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책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예산 확보와 계약금액 결정의 주요 기준인 예정가격의 합리적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계약법과 관련 예규는 적절치 못한 예정가격으로 발주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낙찰자의 항변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설정된 것으로 신뢰하고 입찰하였음에도 문제 발생 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적이다.

■ **공공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부당삭감 실태**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2013년 '부당 단가 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서 상 공사량을 임의 조정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공사 원가 제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여건 및 예산 절감을 이유로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된 설계가격을 발주기관이 임의로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설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예정가격 부당 삭감은 예정가격 삭감을 용인하는 일부 제도적 원인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발주기관의 임의 삭감, 그리고 계약 담당자 및 설계자의 전문성 부족과 실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정가격 부당 삭감 방지를 위한 일본의 선례**

우리나라와 유사한 예정가격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 지난 2005년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예정가격 부당 삭감 행위를 금지하였다. 또한 2015년에는 모든 공공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예정가격 부당 삭감과 관련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발주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다. 그 결과 모든 공공 발주기관(1,788개)에서 예정가격 부당 삭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주요 공공발주기관은 제도적 한계, 계약 담당자 및 설계자의 오류로 인해 개별 공사의 예정가격이 부족하게 책정된 경우, 입찰 단계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공사 계약 방식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제도 개선 방안**

우리 건설업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부당삭감 문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그간의 제도 개선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발주자와 낙찰자 간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예정가격 부당 삭감 실태와 관련 전수 · 추적 조사 실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입찰 절차의 도입 또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계약법」 내 공공 발주자의 적정 대가 지급 노력 의무화 규정 신설이 필요하며, 예정가격 부당 삭감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의신청제 도입과 예정가격 조서 낙찰자 공개 의무화, 입찰 공고시 공사 원가 제비율 사전 공개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건설 경영 동향

DBOM 발주 방식의 장점과 국내 적용 가능성

건설동향브리핑 제674호(2018.09.03.) 최석인 연구위원

■ **DBOM(Design–Build–Operate–Maintain)은 설계시공 일괄(Design–Build) 계약자가 당해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통합형 조달 방식임**

이 방식에서 민간 사업자의 계약범위는 종래의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하나, 재원조달을 공공부문이 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해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DBOM의 장점은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를 단일 계약 주체가 담당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시공 또는 유지관리에 활용될 장비 및 자재를 반영한 설계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유지관리까지 연계되어 시설 및 운영 단계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계약자가 설계 및 건설 공사비 등 초기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비용과 이에 따른 운영 계획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에서 쉽지 않은 생애주기비용 관점의 접근으로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DBOM은 기타 조달방식과 마찬가지로 기술과 가격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나, 과업의 가격과 범위에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가 포함된다는 차이를 가진다.

■ **미국에서 DBOM은 IPD와 함께 유력한 대안적 발주 방식으로 이해**

미국 건설업계는 DBOM의 향후 활용 가치를 높게 판단하고 있다. 2014년 Mcgraw-Hill에 따르면 설계사는 프로젝트 비용 저감과 운영유지 비용의 고려 측면을, 시공사는 프로젝트 리스크와 책임 측면에서 DBOM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최초의 공공 DBOM 건축사업은 민간 계약자와 35년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캘리포니아주 법원 건설공사로, IPD방식이 접목되고 사전 제작 및 모듈러 방식으로 시설물을 건설하였다. DBOM 방식의 특성상 초기 건설비용보다 생애주기비용의 절감 효과가 높았고, 유지관리에 효과적인 자재가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시장에서 DBOM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공공 시설 관리 분야 전문성과 여력 부족한 지자체 사업에 적용 가능**

향후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관리 대상 노후 시설의 개량 사업과 운영 · 유지 관리를 패키지로 한 발주 방식은 민간의 전문성 도입과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단일 개량사업 뿐만 아니라 중 · 소형 개별 사업을 프로그램으로 묶어 발주하는 전략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DBOM 방식은 운영 · 유지 단계의 관리 주체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의 적용 또한 용이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므로 설계와 시공 과정의 각종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 안전사고 조기경보 기능 확보 방안

건설동향브리핑 제669호(2018.07.30.) 유위성 연구위원

■ **건설업 재해, 정책 · 제도 수립과 함께 현실적인 공사수행 여건 개선 필요**

건설업의 안전사고 재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전체 재해 현황의 28.5%를 건설업이 차지, 제조업을 넘어섰다. 과거 발생했던 안전사고 사례의 방대한 데이터 속성은 지역, 공사 종류, 계절 및 요일, 공사 진행률, 기인물, 손실일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지만, 연속적 예방 교육과 공사의 특성에 맞춤화된 실질적인 조기경보 기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2018년 1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관계부처들은 2022년까지 중대 건설사고 재해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한 4대 전략 및 15대 추진 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 및 책임의 명확화,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현장관리 및 감독의 체계화, 인프라 확충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을 포함한다. 또한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을 2022년까지 0.27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을 발표하면서 9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리 및 통제 역할에 집중되어 건설공사 현장 작업자의 상태 및 여건을 고려한 직접적 예방 기능은 부족하다.

■ **정책 수립과 함께 공사 전 기간동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기경보 기능 확보해야**

연속적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기능의 확보는 공사의 특성과 작업 형태에 대한 선제적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적인 계획으로, 건설공사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작업자 업무에 맞춤화된 예방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최근 안전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건설공사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형태에 대한 예방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을 선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센싱(sensing) 기술이 발전하면서 작업자의 위치 · 상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알람을 제공하는 지능형 안전사고 예방 기술 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 **안전사고 조기경보 기능 확보는 안전관리 저감 제도 · 정책 실행력 강화의 시금석**

작업자의 자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면 업무수행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맞춤화된 조기경보 교육 및 예방지침을 제공하여 작업자가 연속해서 안전사고를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제도적 인프라 지원과 발주자의 역할 확대로 건설공사 참여주체들 간의 협력과 원 · 하도급 계약자의 문화 및 인식 변화를 유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및 공기확보 방안 부재 속에서는 안전관리 저감 정책 및 제도 개선의 기대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안전관리에 대한 성실한 계약자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보다 지원 대책 제공이 선행되어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산업 재해 저감 혁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관리 트렌드 분석

건설동향브리핑 제668호(2018.07.23.) 이광표 부연구위원

■ 해외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국제 표준 프로젝트관리 분야 역량 확보는 필수적

미국의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 영국의 APM(Association for Project Management), 세계 프로젝트 경영협회(IPMA, International Project Management Association) 등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또는 산업의 역량 증진을 위해 국제 표준 프로젝트관리 지식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PMI, APM, IPMA 등에서 말하는 표준 프로젝트 관리 기능 분야는 크게 수행활동, 기술활동, 지원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수행활동 : 사업기획 관리, 설계관리, 시공관리, 시운전 관리
- 기술활동 : 통합관리, 범위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HSE관리, 리스크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 지원활동 : 의사소통관리, 클레임관리, 사업정보관리

표 1. 국내 주요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관리 기능 분야별 특징

구분	해외 프로젝트관리 기능 분야별 주요 인터뷰 결과
사업기획관리	• 일부 기업에 한해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사업기획 또는 분석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사업 수주 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관련 조직 또는 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으나, 업무에 대한 절차화나 전산화는 미흡한 실정임.
설계관리	• 절차서 및 전산 시스템 모듈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나, 현장에서 설계관리 활동은 기업의 지침 및 규정과 상이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시공관리	• 조직, 절차, 시스템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음. 이를 사업별로 재구성하여 활용하나 세부적인 절차 및 기능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함. 아직까지 시공 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하여 활동 및 의사 결정을 수행함.
시운전관리	• 시운전 계획의 수립, 정보관리, 변경관리 등 기본적인 항목의 절차서와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적용 범위가 한정됨.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인력의 증진을 위한 지원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
통합관리	• 통합관리를 위한 절차 및 전산 시스템 모듈과 함께 표준 사업관리기본계획(PMP 또는 PEP) 및 해외사업 제안서 등을 보유하고 있음. 다만, 일부 기업에 한해 PMP를 사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활용하고 있음.
범위관리	• 절차서 또는 지침서는 일부 구축되어 있으나, WBS(Work Breakdown Structure), PNS(Project Numbering System)의 정립을 통한 전산 시스템 개발은 다소 미흡함. 사업 수행 중 WBS와 PNS를 일부 연계하여 공사비 집계 등에 활용하지만 개발 범위의 한계로 모든 사업관리 분야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음.
원가관리	• 절차 및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기반으로 사업비 계정을 활용하여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비 전산 시스템 모듈은 관리 계정을 기반으로 한 추적 또는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DB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비 산정, 예산 변경 등에 대한 추적 관리, 계획 대비 집행 실적 분석 등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임.
공정관리	• 절차서 및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 전산 시스템 모듈의 경우 계층화된 공정표 기반의 실적 공정관리 및 진도 관리 등의 기능을 일부 기업만 갖추고 있음. 공정관리 계획 및 수행 시 전문 프로그램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이며 사업비와의 연계를 통한 실적 진도 또는 성과 분석(EVMS) 활동은 미흡함.
리스크관리	• 일부 기업에 한해 절차서 및 전산 시스템과 전사적 차원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 하지만 수주 단계(리스크 식별 및 평가, 수익성 분석 등)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으며 운영 단계의 활동(리스크 재평가, 추적관리 등)은 미흡함.
품질관리	•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있고 담당자는 절차 및 전산 시스템 기반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함.
HSE관리	• 절차지침·규정 등을 보유하고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를 통해 활동을 수행함. 전산 시스템 기반의 HSE관리 활동보다 절차서 기반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자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구매관리	• 기본적인 절차서 및 전사 시스템 모듈이 있음. 구매관리 계획 및 실행, 계약자 관리 등은 기본적인 템플릿, 계약자 데이터베이스(DB), 계약자 관리 절차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함.
자재관리	• 자재 유형 및 목록, 자재 소요 계획서 등은 템플릿 및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며, 자재 소요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함. 자재 이력관리, 품질 검사 등은 절차·시스템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의사소통관리	•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기보다는 자료관리 차원에서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고 있음. 계약자 관리를 위한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경험을 기반으로 발생한 문제 또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음.
클레임관리	• 절차 또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보다는 클레임 발생 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클레임을 사전에 식별 및 평가하지만 그것을 제거 또는 예방하는 방향보다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사업정보관리	• 절차 및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정보관리 계획, 정보의 수집 및 공유, 보안 및 통제 활동을 수행함. 다만, 정보의 데이터화 측면에서는 전산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기업들이 존재함.

■ 국내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시스템 보유, 적용 수준은 여전히 미흡

국내 건설기업들의 프로젝트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16개 주요 기능 분야에 대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는데, 기능 분야별 사업관리체계(절차 · 조직 · 시스템)와 프로세스 그룹(기획 · 실행 · 감시 및 통제 · 종료)에 대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 역량 증진 위해서는 프로젝트관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 기반 업무 수행이 필요

국내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험 기반의 수행방식에서 벗어나 전사 차원의 표준 사업관리체계(절차 · 조직 ·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기능 분야별 절차 및 전산 시스템 모듈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실무진들로부터 체계 및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업무 수행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